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4. 3. .
발 의 자 : 서종수 위원 외 5명

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을 개정(2012.09.27 의회규칙 제593호)하여 의장·부의장 선거시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선거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상임위원장 선거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준용(안 제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자치법』 제62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입법예고 : 필요
 - (2) 일부개정조례안 : 별첨
 - (3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

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생 략) ② <u>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</u>	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한다.</u>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[참고자료]

[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]

제6조(의장·부의장의선거)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
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<개정 2012. 9.27.>